

III. 政策 이슈

1. 94年度 稅制改革案

- 金融實名制의 2段階 실시 준비안으로 선진국형 稅率構造로 改善.
-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 및 法人稅 등 企業課稅의 引下.

-特徵 및 內容

- 이번 稅制改革案은 金融實名制 실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租稅制度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업의 對外競爭力 提高를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稅入基盤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綜合所得稅制

- 金融實名制의 정착에 필수적인 金融所得의 綜合課稅方案을 제시하고 있음.
- 綜合課稅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金融所得을 綜合課稅 대상으로 함.
- '96년부터 실시되는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 대상을 실시 첫째 금융저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부합산기준 4천만 원 초과 고액 금융소득자로 정했음.
- 그러나 上場株式의 讓渡差益 등 有價證券 賣買差益에 대한 과세는 '98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음.

2) 法人稅制

- 기업의 稅負擔 경감을 위해 일반 法人稅率을 과표 1억 원 이하분은 종전대로 18%로, 초과분은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음.
- 一般公共法人에 대해서는 과표 1억 원(종전 3억 원)이하는 18%, 초과는 25%로 하고 協同組合法人에 대해서는 12%로 2%포인트 인상했음.

3) 特別消費稅制

- 特別消費稅率을 현행 10-60%의 6단계에서 10, 15, 25%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인하하여 소비세제를 현실화하였음.

4) 讓渡稅 및 相續稅制

- 讓渡稅의 경우 '96년부터 세율을 조정해 2년이상 보유할 경우 현행 40-60%를 30-50%로 낮추고 단계도 5단계를 3단계로 줄일 예정임. 相續稅의 경우 10-50%(5단계), 증여세의 경우 15-55%(5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10-40%(4단계)로 조정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5) 稅務行政

- 調査 事前通知制度를 신설하는 등 각종 納稅節次를 간소화했음.

-問題點

- 金融所得에 대해 綜合課稅하는 기준금액이 4천만 원 초과금액으로 되어 대상 家計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應能負擔原則에 적합치 않음.
- 法人稅의 경우 法人稅率을 2%포인트 인하해도 대만(25%)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데다 농특세 신설로 법인들의 부담이 2%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실질인하효과는 없음.
- 特別消費稅의 경우 칼라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과즙음료, 자양강장제 등 대중 소비품목이 여전히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남아 있음.

-政策課題

- 綜合課稅 기준금액이 된 4천만 원 이하의 金融所得者는 원천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로 끝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려면 채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4억 원이상의 금융자산가이며 주식은 10억 원은 되어야 함. 그러므로 종합과세 대상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어야 함.
-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해서는 法人稅率의 추가인하, 特別消費稅 과세대상품목의 추가축소와 최고세율의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中小企業의 競爭力 強化 方案으로 中小企業의 法人稅率을 18%에서 추가로 인하하고 적용대상도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해야 함.
-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은 土地超過利得稅는 완전 폐지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支給利子 損金不算入制度, 非業務用不動產 關聯制度 등은 대폭적으로 정비되어야 함.

(천 일 영)